

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-234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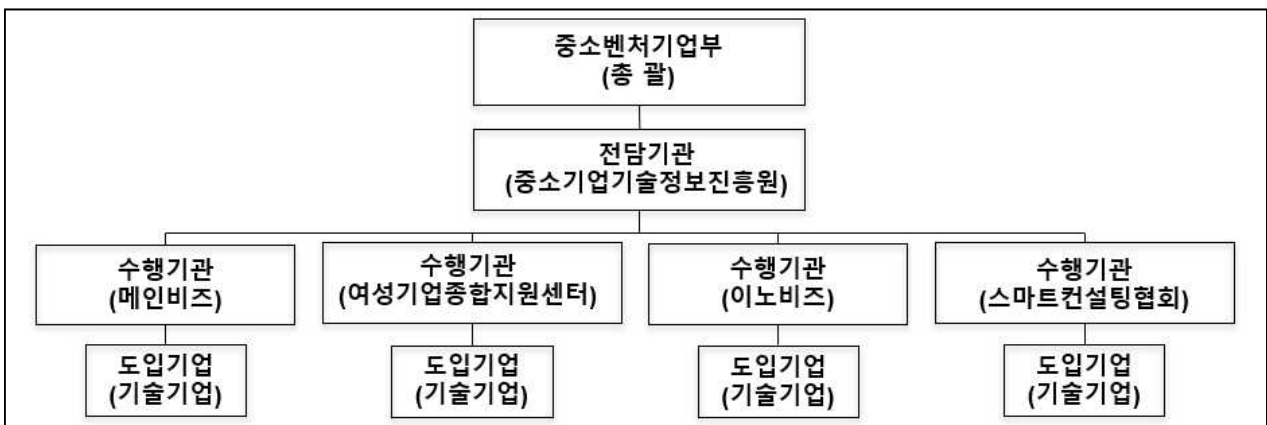
2026년 「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화)을 위해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는 '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'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6년 3월 3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. 사업 개요

- 사업목적 : 첨단ICT·AI를 활용한 서비스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및 혁신을 촉진
 -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도모
- 지원대상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지원근거 :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8조
- 지원규모 : 175개* 과제, 100억원 내외
 - * 신규 지원 150개 내외, 고도화 지원 25개 내외
- 추진체계 및 역할



- (전담기관) 사업 고도화 및 신규 지원사업 기획, 예·결산 및 사업 성과관리 등 지원프로그램의 세부설계 및 주무부처 정책기획 지원
- (수행기관) 현장수요 발굴, 코디네이터 지원, 과제평가·사후관리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수행 및 우수성과 공유·확산을 위한 네트워킹 제공
- (도입기업)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
 - *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·전담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
- (기술기업)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,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, 유지·보수 등 사후관리

2. 지원유형 및 지원내용

< 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지원분야 >

| 지원분야 | 지원 과제수 | 지원기간* (개월) | 총사업비 내 정부지원 비중(%) | 지원한도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신규 지원 | 150개 내외 | 6개월 (최대 8개월) | 50% 이내 | 5천만원 |
| 고도화 지원 | 25개 내외 | 6개월 (최대 8개월) | 50% 이내 | 1억원 |

* 지원기간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 등 협약변경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

※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

- (신규 지원)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의 신규 개발 및 도입 비용 지원
 - ※ (지원대상 및 규모) 컨소시엄 /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% 이내, 5천만원 한도
- (고도화 지원) 본 사업 혹은 타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대상으로 서비스 확장 등 고도화 비용 지원
 - ※ (지원대상 및 규모) 컨소시엄 /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50% 이내, 1억원 한도

3. 신청자격 등

- (공통) 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② 도입기업이 기술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

< 컨소시엄 구성 >

- ▷ (도입기업) 서비스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
- ▷ (기술기업) 솔루션 개발·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,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'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'에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Pool에 등록된 중소기업

■ (필수이행사항) 기술기업 Pool 등록 및 현행화

☞ 신규 기술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(신청 후 검토 및 등록까지 2주정도 소요)될 수 있으므로,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까지 신청 필요

- * (신규등록) '26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기업의 경우 기술기업 풀 등록 필수
- * (현행화) '26년 이전 기술기업 풀 등록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정보 업데이트 필수

[붙임2]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기술기업 Pool 등록 안내 참고

○ 컨소시엄 구성요건

- 도입기업 1개사와 기술기업 1개사로 구성

■ 도입기업의 원활한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기업 검색기능 제공

- www.smart-factory.kr → 사업안내 → 기술기업 검색(스마트서비스)
- * 맞춤형 기술기업 POOL 및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정보 검색 가능

○ (우대사항) 아래 해당기업은 서면평가지 가점부여(접수마감일 기준)

| 적용범위 | 가점항목 | 가점항목 | 배점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|
| 공통 | 코디네이터 활용 [붙임 1 참조] | ○ "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" 신청 및 기획단계 컨설팅 완료 | 2 |
| | 지방 소재 기업 | ○ 서울, 경기, 인천 제외 지역 소재기업 * 본점(사업자등록증명원) 기준 | 1 |
| | ESG* | ○ 환경표지 인증, 저탄소 제품 인증 등 친환경 인증 보유기업 | 1 |
| | | ○ 사회적기업 인증·확인서 보유 기업 | 1 |
| | | ○ 정보보호, 내부통제 등 책임경영 관련 체계 보유 기업 (ISO/IEC 27701, ISMS-P 인증,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업**) | 1 |

* 상기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1점 부여 (중복 적용 불가)

**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(ids.kisa.or.kr) 정보보호 공시현황 등록 기업(최근3년 이내)

※ 국제표준 및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또는 공인기관이 인정한 인증서에 한함

※ 코디네이터 활용, 지방 소재 기업, ESG 가점을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부여

- (지원 제외사항) 접수 마감일 기준 컨소시엄 구성 기업(도입·기술기업) 및 각 기업 대표자 등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※ (1)~(4) 도입기업만 해당, (5)~(12) 도입·기술 기업 모두 해당

< 지원제외 대상기업 >

- (1)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('20~'25)은 '26년 신규과제 참여 불가(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,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)
- (2)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- (3) 스마트제조지원강화사업(舊스마트공방)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- (4)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- (5)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/ 유흥·향락업, 주점업
- (6) 부도 및 휴·폐업 중인 기업
- (7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(8)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(9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
* [(6)~(9)의 예외 사유]

-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
-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
-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
-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

- (10) 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에 해당하는 경우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인 경우
- (11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경우
- (12) 기타 중소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4. 접수기간 및 방법

- (신청·접수기간) 2026년 4월 20일(월) ~ 5월 22일(금) 16:00까지

< 신청·접수 유의사항 >

- ① 접수마감일('26.5.22.) 16시 정각에 신청·접수 마감
- ② 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~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
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

| 구 분 | 사업관리시스템 접수안내 |
|--------|--|
| 접수방법 | ○ www.smart-factory.kr → ①회원가입 → ②로그인 → ③사업관리 → ④과제신청 → ⑤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(구비서류) 등록 |
| 신청서류 | ○ www.smart-factory.kr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 → "2026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공고" |
| 접수 매뉴얼 | ○ www.smart-factory.kr → 알림/참여마당 → 온라인 매뉴얼 → "2026년 일반사용자 매뉴얼 최신버전" |

■ 전담-수행기관 공동 사업설명회('26.4월 중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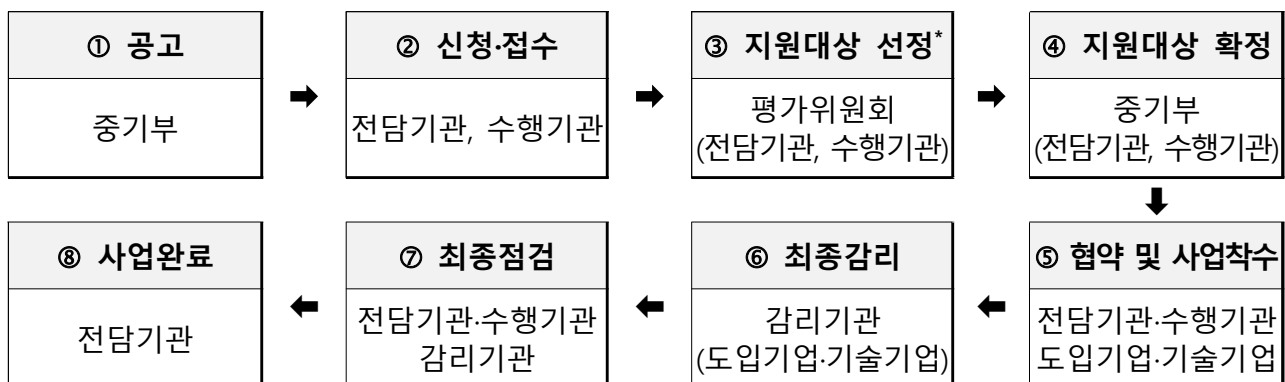
-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
(<https://www.smart-factory.kr>)

5. 제출서류

| 연번 | 서 식 명 | 도입기업 | 기술기업 | 관련서식 | 제출구분 |
|----|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① | 사업계획서 1부 | ○ | | 서식1 | 신청시 |
| ② | 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| ○ | ○ | 서식2 | 신청시 |
| ③ | 개인(기업)정보 활용동의서 | ○ | ○ | 서식3 | 신청시 |
| ④ | 사업자등록증명원 | ○ | ○ | 서식4 | 신청시 |
| ⑤ | (가점 해당시) ESG 인증·확인서 (친환경 관련 인증서, 사회적 가치 관련 인증서, 정보보호 등 책임경영 관련 인증서 등) | ○ | | - | 신청시 |
| ⑥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| ○ | ○ | - | 현장평가시 |
| ⑦ |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증명원 | ○ | ○ | - | 현장평가시 |
| ⑧ | 중소기업확인서 | ○ | ○ | - | 현장평가시 |
| ⑨ | 기술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(「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」 또는 「학력,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」 등) | | ○ | - | 현장평가시 |

* 관련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-사업안내-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

6. 지원절차



* 서면평가, 원가검증 및 현장평가

7. 평가방법

- (서면평가)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사업 필요성,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,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
 - ※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배정예산 및 지원 목표과제 수를 감안하여 원가검증 및 현장평가 대상과제 선정
- (원가검증) 사업계획서 상의 투입원가(인력, 장비, 시설 등)를 산출하여 예산 집행계획의 경제성, 타당성을 검토
- (현장평가)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타당성 여부, 도입기업의 추진 의지 및 역량, 기대효과 등을 평가

8. 기타사항

- 반드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하며, 접수 완료 후 서류보완은 불가함
- 신청기업(컨소시엄)은 제출서류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또는 추가 자료 제출·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해당 요구에 불응할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음
- 신청서 작성 오류 및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(컨소시엄)에 있음
-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, 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(구축 및 활용단계)을 필수 연계하여야 함
- 본 사업에 선정된 경우, 필요시 전담·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 수행 관련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함
- 최종 선정 도입기업은 본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솔루션의 데이터 수집·분석·활용을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

9. 문의처

| 담당기관 | | 문의사항 | 연락처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업총괄 | 중소벤처기업부 | 사업계획 수립 | 국번없이 1357 |
| 전담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| 공고 및 신청·접수 | 국번없이 1357 (smartservice@tipa.or.kr) |
| 수행기관 |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| 신청·접수 및 코디네이터 지원관련 | 02-369-0994, 0998 (smartservice119@wbiz.or.kr) |
| |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(이노비즈) | | 031-628-9696, 9694, 9658 (smartcs@innobiz.or.kr) |
| |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(메인비즈) | | 02-2230-2161, 2164 (smart@mainbiz.or.kr) |
| |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| | 02-2088-8965, 8236 (korsca_svc@korsca.kr) |
| 시스템 | 사업관리시스템 지원 |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·접수 등 | www.smart-factory.kr (SR요청) |

붙임1

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 개요

- (지원목적)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활용, DX·AX 수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분야 중소기업의 DX·AX 편의 제고
- (지원대상 및 내용)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도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기획-구축-활용 등 전주기에 전문가의 1:1 컨설팅 지원(총 4회 내외)

< 단계 별 스마트서비스 코디네이터 지원내용 >

- (기획단계) DX수준 진단 및 로드맵 제시, 필요기술 컨설팅, 우수 기술기업과의 매칭 지원, 사업계획서 도출 등(2회 내외)
- (구축단계) 사업계획과 부합하는 솔루션 설계 및 개발, 구현 등 구축 초기부터 실제 서비스 적용까지 전반에 대한 컨설팅(1회)
 - ※ 구축단계 컨설팅 중 개인정보보호분야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, 개인정보위원회 주관 「중소기업 대상 개인정보보호 기술지원」 컨설팅 연계 제공(예정)
- (활용단계)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및 A/S·고도화 지원기획 등(1회)

- (지원방식) 최초 사업기획 단계에서 매칭된 코디네이터를 솔루션 구축·운영 등 이후 단계까지 연계하여 컨설팅의 연속성·효과성 제고
 - 코디네이터 지원을 신청한 기업에는 “기획단계” 컨설팅을 기본 제공하며, 기획단계 컨설팅 완료기업은 서면평가 우대(가점 2점)
 - 기획단계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신규 또는 고도화 지원에 최종 선정되어 과제 진행시, 구축단계 및 활용단계 컨설팅 추가 제공
 - 기획단계 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신규 또는 고도화 지원에 탈락한 경우, 코디네이터 지원은 기획단계 컨설팅으로 종료

□ (신청기간) 2026년 1월 30일(금)부터 예산소진시까지

- (신청방법) 컨설팅을 희망하는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
 - ※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일정은 수행기관에서 별도 안내(수행기관 이메일은 공고문의 9번 문의처 참조)
 - ※ 신청서 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www.smart-factory.kr)-알림/참여마당-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

스마트서비스 기획단계 컨설팅 지원 신청서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|--|
| 수행기관 (택 1)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(메인비즈)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이노비즈) 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| | |
| 신청기업명 (사업자등록번호) |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(상호)명 (XXX-XX-XXXXX) | 담당자 | 000 (00부, 실/책임) |
| 연락처 | 사무실 : 00-0000-0000 휴대폰 : 010-0000-0000 | 이메일 | abcde@efg.co.kr |
| 주소 | | | |
| 지원요청 내용 |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지털 인프라·역량진단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계획 작성 자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 | |
| 향후 본 사업 지원계획 | <input type="checkbox"/> 2026년 <input type="checkbox"/> 2027년 <input type="checkbox"/> 2028년 이후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<input type="checkbox"/> 고도화 |
| 사업 기획단계 컨설팅 희망일정 | | | |
| 희망 전문가 | ※수행기관이 관련 전문가를 전문가 풀에서 매칭 | | |

1. 개요 및 필요성

| |
|--|
| 1.1 추진배경 |
| - 사업 추진배경 및 기업의 기획단계 컨설팅 지원 필요성(애로사항 해결 중심) 기술 |

| |
|---|
| 1.2 코디네이터 활용 목적 |
| -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기획단계 컨설팅의 목적(달성 목표와 기대효과 중심)을 기재 |

2. 현황 및 목표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1 기업의 주요사업 내용 |
| - 기업의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|

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2.2 문제상황 및 개선 목표 |
| - 개선,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표를 함축적이고 명확하게 서술 |
| -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기획단계 컨설팅의 기대효과 |

위와 같이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기획단계 컨설팅 지원을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기업명(상호) : (주) 00000

대 표 : ○ ○ ○ (인)

붙임2

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풀 등록 안내

□ (자격요건) 빅데이터, 인공지능(AI) 등 정보통신기술(ICT) 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

○ 아래의 기업은 기술기업 등록 제한

※ (등록제한) 등록기간 마감일 기준 아래의 요건 ((1)~(6))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가능

- (1)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,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- (2)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(3)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(4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이거나,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- (5)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경우
- (6)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* [(1)~(4)의 예외 사유]

-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

□ (등록 기간) 상시

- 신규 기술기업 Pool 등록 절차가 지연(신청 후 검토 및 등록까지 2주정도 소요)될 수 있으므로, 최소 신청마감일 2주 전까지 신청 필요

* '26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술기업의 경우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풀 신규 등록 필수

□ (등록내용 및 방법) 기술기업이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자사 해당하는 전문·특화업종을 선택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

○ 기술기업 POOL신청시 스마트서비스 구분 선택 및 승인 필수(기존 스마트제조 POOL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스마트서비스 POOL 재등록 필요)

| 구분 | 사업신청 가능여부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스마트제조 기술기업 POOL 등록기업 | 불가능 (스마트서비스 POOL 신청·승인 후 가능) |
| 스마트서비스 기술기업 POOL 등록기업 | 가능 |

-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입력정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전담기관에서 승인 예정 (3~7일 소요)

□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신청

<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기술기업 POOL 신청순서 >

| | 주소 | 관련내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|
| (1단계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| smart-factory.kr | ① 회원가입 (기업, 참여인력 모두) - 기업회원(대표자) : 기관 신규 등록 - 개인회원 : 참여인력 : 소속(재직) 기술기업 ② 권한신청 ③ 기술기업 POOL 신청 |
| ↓ | | ↓ |
| (2단계) 전담기관 승인 및 Pool 등록 완료 | - | ① (전담기관)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후 기술기업 Pool 등록신청 승인 ② 기술기업 Pool 등록 완료 |

□ 제출서류

| 구 분 | 제출서류 |
|-----|--|
| 공통 | ① 서약서 ②기업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③ 정보활용동의서 |
| 기업 | ① 사업자등록증명원 ②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③ 최근3개년 재무제표증명원 ④ 중소기업확인서 |
| 인력 | ①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② SW·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 ③ 소프트웨어기술자 및 기업 경력증명서 ④ 그 외 경력증빙에 필요한 서류 |
| 실적 | ① 스마트서비스 실적 협약서 및 증빙서류 등 |

□ 문의처

| 담당기관(부서) | | 문의사항 | 연락처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전담 기관 |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AX사업팀) | 기술기업등록 승인 | smartservice@tipa.or.kr |
| 시스템 | 사업관리시스템 지원 |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등록 등 시스템 관련 문의 | www.smart-factory.kr |

참고1

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

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(불법 브로커)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!

- 제3자(불법 브로커)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·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.

| 부당개입 주요유형 | |
|---------------|---|
|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|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|
|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| 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|
| ③ 허위 대출 약속 |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(요건 미흡 등)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|
| ④ 정부기관 등 사칭 |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|
| ⑤ 부정청탁 | 정부,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|
| ⑥ 계약불이행 |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|

-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,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또한 정부,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<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>

- 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) <https://tipa.or.kr> (☎ 참여마당→원클릭신고창구)
- (부정사용신고센터) <https://smtech.go.kr> (☎ 고객지원 →부패행위 신고)
- (중소기업 통합콜센터) ☎ 1357

참고2

국세청 AI 스타트업 · 중소기업 세정지원 내용

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

- 일시적인 자금난 등*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

* 재난·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(국징법 §13 ①)

-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*

*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(국징령 §16)

-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*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

* 사업을 정상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(국징법 §105 ①)

경정청구 즉시 처리·환급금 조기지급

-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·부가세·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 (기존 2月*→1月)

*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 (국기법 §45조의2)

- 법인세·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

세무검증부담 최소화

- (AI 스타트업)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

- (AI 중소기업)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

* 탈세제보,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

기타

-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·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

※ 중기부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